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가단1415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2021. 1. 20. 접수 제24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백웅철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소외 B(이하 'B'이라 합니다)의 자녀 C의 배우자로 B의 자부이고, 원고는 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소외 B은 2017. 3.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D 676.8㎡(이하 '과세 부동산' 이라 합니다)를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2017. 5. 31.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고양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과소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2020. 12. 31. 납부기한으로 101,269,38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B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상기 양도소득세 1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바, 가산금 17,468,960원을 포함한 국세 118,738,3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전산조회)

<표1: B의 2022. 8. 23.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양도 소득세	2017	2017. 3. 31.	2020. 12. 1.	2020. 12. 31.	101,269,380	118,738,340
합 계					101,269,380	118,738,340

다. B의 부동산 처분 경위

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1. 1. 14. 자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21. 1. 20. 청주시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 접수번호 제247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데(2004다53173 판결 등),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사해행위 전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고지일이 아닌 과세요건 충족일(국세기본법 제21조)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의 '과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B이 '과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7. 3.)의 말일인 2017. 3. 31.이 납세의무성립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인 2021. 1. 14.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재산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가

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B의 사해행위일 (2021. 1. 14.) 시점에서의 적극재산은 126,447,939원이고, 소극재산은 262,502,046원으로써 순자산은 △136,054,107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심화시켰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채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5호증 기준시가 전산조회, 갑 제6호증의 1 이 사건 부동산 피담보채무 등 확인요청 공문, 갑 제6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 2 : 소외 B의 사해행위일 당시 적극재산 목록>

순번	재산소재지	종류	면적(m ²)	평가액(원)	비고
1	충주시 E	전	1,545	30,282,000	기준시가
2	하남시 F, G호	오피스텔	51.4535	69,050,597	기준시가
		대지권	3.8407	27,115,342	기준시가
		소계		96,165,939	
합 계				126,447,939	

<표 3 : 소외 B의 사해행위일 당시 소극재산 목록>

2

순번	항목	내역	평가액(원)	비고
1	근저당채무	충주시 E (근저당권자 : H조합)	20,302,586*	채권 최고액
2	근저당채무	하남시 F, G호 (근저당권자 : I은행)	137,892,000	채권 최고액
3	조세채무	국세채권	104,307,460	-
합 계			262,502,046	

* 공동담보 충주시 E, J 피담보채무 잔액 80,000,000원

- 충주 E 근저당 설정당시 감정평가액 35,880,000원

- 충주 J 근저당 설정당시 감정평가액 105,501,000원

- $80,000,000원 \times 35,880,000원 / (35,880,000원 + 105,501,000원) = 20,302,586$

원

<표 4 : 사해행위로 인한 B의 재산상태 변화>

구 분		내 역	평가액(원)	입증자료
적극재산 (①)	부동산	충주시 E	30,282,000	갑 제5호증
	부동산	하남시 F, G호	96,165,939	갑 제5호증
	적극재산 합계		126,447,939	
소극재산 (②)	근저당채무	충주시 E	20,302,586	갑 제6호증의 1
	근저당채무	하남시 F, G호	137,892,000	갑 제6호증의 2
	조세채무	국세	104,307,460	갑 제2호증
	소극재산 합계		262,502,046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①-②)			△136,054,107	
사해행위	부동산	충주시 E	30,282,000	

(④)	소계	30,282,000	
채무초과(③-④)		△166,336,107	

다. 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B은 '과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고양세무서장이 신고서 검토 후 과소신고로 고지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자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시점(사해행위 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바, B에게 양도소득세 조세 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은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손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B에 대한 국세채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1. 9. 23. 채납자 재산 전산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이 사건 부동산 피담보채무 등 확인요청 공문).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B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 1545㎡

- 이 하 여 백 -

